Ⅵ. 결론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의 노령화, 질병형태의 변화, 가족형태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국민들의 건강보장에 대한 니드가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으나, 공적건강보험제도가 미비되어 있어 국민들의 니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강화를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간병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의료보장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의 한계와 사회보험의 성격상 공적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의 다양한 니드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사 역할분담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적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국민들의 다양화되고 있는 건강보장에 대한 니드를 수용하고, 또한 사회적 관심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강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은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초통계의 부족과 운영기술 및 전문인력의 부재로 보험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여 국민들의 니드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민영건강보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이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먼저 민영건강보험이 공적건강보험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가 공적건강보험의 기초통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시장 진입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켜 민영건강보험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불투명한 제도운영으로 인한 생·손보사간의 마찰을 제거하는 동시에, 향후 민영건강보험시장의 활성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사업자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건강보험상품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통계의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품판매전략을 수립하여 민영건강보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철저한 언더라이팅 및 급여지급심사평가업무를 통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비용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객들의 건강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고객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건강관련산업과의 제휴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위험관리자문업무를 개발하여, 위험인수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위험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민영건강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과 시장활성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준비사항 및 역할확대방안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비교적 새로운 보험분야일 뿐만 아니라 보험분야가 광범위하여 실무자료의 수집에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건강보험분야는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접근이나 분석에 한계가 있어, 각 분야별 세부적 대응방안 제시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현재 민영건강보험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행 민영건강보험상품 운영상의 문제로 건강보험에 대한 실적통계가 불명확하여, 장래의 민영건강보험 시장규모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미진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기로 한다.